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4

2018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7일, 김생환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원악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생확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임기 연임에 대해 '위원 연임 기한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2년 임기의 경우 연임 3회로 6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사업의 추진 등 효율성 저하, 신규 위원 위촉시 전문가 확보 어려움, 위원회 활동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본 조례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6년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 임기와 운영, 활동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각종 위원 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제8조제3항)한 바 있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1기 위원 위촉 시('17.2.1 ~) 위원 연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운영1)한 바 있음.

그러나 보다 많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 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동 조례의 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총 4년) 개정하였고 차기(제12기) 위원회 위원 임기에 맞추어 2019년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조례 개정 당시 취지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위원 선임 및 지속사업 추진 등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음.

^{1) &#}x27;18.1.4 동 조례 개정 이전에는 연임 횟수 대한 규정("~ <u>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이 없어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연임하는 위원이 다수 있었음

- 한편, 현행 위원 연임 규정('19.2.1 시행)에 따라 차기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94명) 위원의 41%(39명)가 교체되어야 하고 추가로 회의 참석률 저조 등 불성실한 위원(23명)까지 교체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총 교체 위원은 65% 이상²)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위원의 65% 이상이 교체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안 제3조제2항과 같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총 6년의 기간 내에서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불성실 위원 교체 대상을 회의 참석률 40%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 참석률 기준을 50% 이상³⁾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제11기 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률 현황〉

참석률	40% 이하	50% 이하	60% 이하	비고
위원(명)	23	34	47	참석률 0%도 6명

²⁾ 개인 신상에 의해 차기 위원 선임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된 수치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형	y과 같음)
② 위촉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	② 위촉위원의	임기	<u>는 2년으로 하</u>
되 한 차례만 연임힐	<u>수 있다.</u> 다만,	되 두 차례만 연	년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